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관련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09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유족회 등 관련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br>재정지원 근거 마련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4.
3. 회 부 일 : 2024. 11. 5.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으로 묘지 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이를 근거로 거창군과 산청군은 거창사건등 희생자합동위령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위령탑 등 조형물 설치, 묘지 조성 및 관리, 역사교육관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유족회에서는 매년 합동위령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 범위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유족회의 위령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족회의 위령사업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유족회 등 관련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회 등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재정지원 등) (생략)<br><br><신설> | 제8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br>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거창사건 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br><br>부칙<br>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법 제8조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 지원의 요건이 한정적이고, 다른 유사 과거사 사건에 관한 입법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sup>1)</sup>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현재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위로를 위한 추모공원 운영, 위령행사 및 유족회 지원 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sup>2)3)</sup> 법률상 재정지원 근거의 내용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거창사건등 관련 국비 지원 현황(2021년~2024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거창사건    | 추모공원 운영     | 535   | 635   | 924   | 834   |
|         | 위령행사·유족회 지원 | 550   | 65    | 75    | 78    |
| 산청·함양사건 | 추모공원 운영     | 307   | 392   | 688   | 558   |
|         | 위령행사·유족회 지원 | 143   | 64    | 69    | 75    |

주: 예산 규모 기준임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1)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세부사업명: 과거사관련사업지원(코드: 2431-301), 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현황(2021~2024년) : 거창사건 2,543백만원, 산청·함양사건 98백만원

따라서, 유족회 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수용하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43 |